

## 기록평가의 이론적 지향과 방법론 분석

An Analysis of Theoretical Orientations and Methodologies of  
Archival Appraisal

설문원(Seol, Moon-Won)\*

1. 머리말
2. 보존기록 평가에서의 출처 원칙과 적합성 원칙
  - 1) 출처 원칙과 적합성 원칙
  - 2) 기록평가에서 출처와 적합성 논쟁
  - 3) 출처 원칙으로 충분한가?
3. 보존기록 평가의 방법론적 분석과 적용
  - 1) 방법론적 범주 구분
  - 2) 공공기록물 영구보존 기준의 분석
4. 맺음말

---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eol@pusan.ac.kr).

■ 투고일: 2022년 12월 30일 ■ 최초심사일: 2023년 01월 16일 ■ 최종확정일: 2023년 01월 25일.

■ 기록학연구 75, 5-39, 2023, <https://doi.org/10.20923/kjas.2023.75.005>

## 〈초록〉

근대 기록학에서 기록평가의 목적은 어떤 기록을 영구적으로 남겨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공공기록물관리제도가 도입되고 20년이 넘었지만 어떤 기록을 영구기록으로 남겨야 할지 그 기준과 방법론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 연구는 기록평가의 이론적 지향이 갖는 방법론적 의미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존기록평가 정책과 실무에 내재된 이론적 지향을 파악함으로써 그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의 기록평가이론이 출처와 적합성 지향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각각의 특징과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다. 출처 기반의 평가는 ‘구조 중심’이고 적합성 기반의 평가는 ‘내용 중심’이며, 전자는 “기록생산 현상의 재현”에 초점을 두고 후자는 “사회 현상의 재현”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지향이 방법론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다시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제시된 영구기록물 선별기준을 분석하고, 각 기준에 내재된 이론적 지향성을 고려한 평가 실무 및 정책상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기록평가, 기록 선별, 적합성 원칙, 출처 원칙, 미시 평가, 거시 평가**

## 〈Abstract〉

More than 20 years after introducing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criteria and methodologies for archival appraisal and selection are still unclear. Modern archival appraisal theories have developed in two orientations, such as provenance and pertinenc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thodological implications of each theoretical orientation of archival appraisal and to suggest som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appraisal practices and policies. Firstly, archival appraisal theories are analyzed according two orientations.

Secondly, four methodologies are derived from combining the macro/micro dimension and theoretical orientations. Thirdly, the methodological orientations of the criteria for selecting permanent records present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nalyzed. Finally, based on these analyses, appraisal policies and practices for selecting the records with permanent value are proposed to be improved.

**Keywords :** archival appraisal, archival selection, principle of pertinence, principle of provenance, micro-appraisal, macro-appraisal

## 1. 머리말

기록평가(archival appraisal)는 어떤 기록을 영구적으로 남겨야 할지를 정하는 업무이다.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기록관리가 대두되면서 평가의 개념 범위가 확장되었지만, 아카이브 관점에서 평가는 “기록을 생산한 목적에 따른 활용이 다한 후에도 계속 필요한 가치 있는 기록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Pearce-Moses, 2005, 22). “결국은 평가가 아카이브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Huth, 2016, 13)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기록평가는 보존기록, 즉 아카이브 관리의 핵심적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기록관리 제도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규범은 빈약하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될 때 법의 목적에는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sup>1)</sup>. 그러나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록유산’이라는 단어는 목적에서 사라졌으며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

---

1)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행정 구현”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sup>2)</sup> 현용기록 관리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법률임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국가가 영구적으로 남겨야 할 기록이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한 평가와 선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보존기간 책정이라는 스케줄링 업무 속으로 편입되었다. 영구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의 평가·선별과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불분명하고(현문수, 2019), 아키비스트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ISO 15489-1과 ISO/TR 21946에서는 ‘평가(appraisal)’를 어떤 기록을 생산하고 획득해야 할지, 그리고 얼마 동안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업무 활동을 평가(evaluating)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위하여 업무 활동뿐 아니라 업무맥락 분석, 그리고 위험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한다(ISO 15489-1: 2016, 7장). 이러한 평가는 현용기록 관리의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영구보존기록의 선별과 보호를 그다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후대를 위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책무이자 존재의의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고전적 평가론의 중심이며 여전히 현대의 기록물관리기관의 책임 영역에 놓여있는, 영구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록평가는 단순한 실무가 아니라 이론, 근거, 정책 등을 통해 구성되는 복합적인 일이다. 기록학 사전에서는 “명확하게 성문화된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갖고 있을 법한 기록을 확인하고, 수집, 선별하기 위한 이론, 근거, 정책, 절차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Craig, 2015). 기록을 생산한 목적에 따른 활용이 다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기록을 선별하는 것’은 매우 이론적이면서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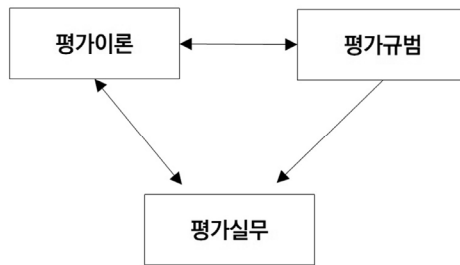
---

2) 2006년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론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 계속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가치는 누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며, 미래에도 계속 이용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근대 기록학에서의 평가 논쟁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다양한 환경에서 생산된 다양한 유형의 기록에 적용해야 하는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 원칙이 필요하고 일반 원칙은 이론을 통해 도출된다.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도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 가령 영국에서는 ‘기록가치론’에 따른 미시평가를 기본으로 국가기록평가체계(그리그 시스템)가 설계되고 관련 규범도 만들어졌다. 캐나다에서는 ‘거시평가론’에 입각하여 평가체계를 설계하고 평가도구와 평가절차, 평가정책 등 관련 규범이 거시평가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Klett(2019)은 스웨덴의 공공기록평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평가실무는 <그림 1>과 같이 이론과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평가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규범 역시 이론적 지향과 방법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림 1〉 기록평가에서 이론, 규범, 실무와의 관계  
(Klett, 2019, 92)



기록평가가 어떤 이론적 지향을 갖는지에 따라 평가의 원칙과 방법

론은 달라진다. 기록평가 규범이나 실무의 이론적 지향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출처(provenance)와 적합성(pertinence)이라는 대립되는 접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출처주의가 기록관리의 주류 원칙으로 확산되면서 적합성의 원칙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기록관리 실무에서 적합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기록평가에서 적합성과 출처 논쟁은 서구 기록학계, 특히 1970~80년대 독일에서 활발했으며, ‘기록화전략’과 같이 적합성을 근거로 한 평가 방법은 여러 영역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록평가의 이론적 지향이 갖는 방법론적 의미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존기록평가 정책과 실무에 내재된 이론적 지향을 파악함으로써 그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이론을 둘러싼 논의가 두 가지 지향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을 구체적인 평가실무와 연계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평가방법론을 다시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제시한 영구기록물 평가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에 맞는 평가 선별을 위하여 실무 및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 2. 보존기록 평가에서 출처 원칙과 적합성 원칙

### 1) 출처 원칙과 적합성 원칙

기록관리에서 적합성(pertinence)<sup>3)</sup>은 출처(provenance)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ICA 용어사전에서는 적합성 원칙(principle of pertinence)을 “기

---

3) 기록학에서 pertinence는 특정 주제와의 관련성이나 적합성을 의미.

록을 출처와 원질서와 관계없이 주제나 내용에 따라 정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ICA, In.d.). 내용 중심의 접근법(content-based approach)이라고도 불린다. 도서관의 분류방식에 영향을 받은 적합성 원칙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유럽 등지에서 널리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매뉴얼(Dutch Manual)이 출판되고 출처의 원칙이 확산되면서 적합성 원칙은 적어도 정리(arrangement)의 원칙으로는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적합성에 따라 기록을 정리하면 기록의 원래 맥락이 사라지고, 이용자는 아키비스트가 재분류를 통해 부여한 새로운 맥락과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이용하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보았다(Taylor,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평가 및 재평가의 기준으로 자주 소환되어 왔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출처와 적합성에 관하여 상당히 풍부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출처와 적합성의 원칙은 기록평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독일의 기록학자 멘네하리츠는 기록평가의 전통을 출처주의 기반의 ‘구조 중심’의 평가와 적합성 기반의 ‘내용 중심’의 평가로 구분하였다(김현진, 2006, 342). 이승억은 출처 지향의 기록평가는 “기록생산 현상의 재현”에 초점을 두지만 적합성 지향의 기록평가는 “사회 현상의 재현”에 초점을 둔다고 구분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출처 지향의 평가는 “기록이 만들어진 원천이나 그 유지 이력에 주목”하지만 적합성 지향의 평가는 “기록생산 외부의 현상에 주목”한다(이승억, 2022)<sup>4)</sup>. 기록생산 외부의 현상은 기록의 생산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록 내용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의미한다. 기록이 생산될 때에는 기록이 어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이용될지, 어떤 사회적 가치와 연결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기록의 생산 출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을 평가하는 것은 기록

---

4) 미발표원고이지만 저자의 허락을 받아 인용함.

의 이용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해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을 기록화하려는 적합성 지향의 평가는 “임의적인 주제 선택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역사적 서사(narrative)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기록을 남기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이승억, 2022).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평가 방법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출처 지향의 평가에서는 기록의 생산 출처로서 조직이나 기능의 중요성이 기준이 된다. 반면 적합성 지향의 평가에서는 기록에 담긴 내용이 사회적 현상을 재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가 기준이 된다. 이러한 차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출처와 적합성 지향 평가의 비교

	출 처	적 합 성
관 점	“기록이 만들어진 원천이나 그 유지이력”에 주목	“기록생산 외부 현상”에 주목
기 준	-기록 생산 조직이나 기능의 중요성 -기록생산자와 기능의 가치와 기록의 가치를 동일시	-기록에 담긴 내용이 사회적 현상을 재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 -사회 현상으로서 사물, 인물, 사건의 가치와 기록의 가치를 동일시
방법론	기록이 생산되는 구조 분석	기록의 내용 분석

## 2) 기록평가에서 출처와 적합성 논쟁

### (1) 독일

북미지역의 아키비스트들 간에 ‘증거-기억’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던 기간에 독일에서는 ‘출처-적합성 갈등’이 전개되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유럽의 아키비스트들은 사람, 장소, 주제 키워드와 관련된 주제명(subject headings) 기반의 정리방법을 채택했다(Taylor, 2015).



그러다가 독일에서는 19세기 중반에 출처주의에 의한 정리가 상당히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김현진, 2006, 341). 그러나 평가에서는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었으며 당연히 기록의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록평가에서도 출처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엄청난 기록이 아카이브로 이관되면서 기록의 내용을 파악하고 가치를 분석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키비스트들은 실용적 차원에서 기록 생산자의 가치를 기록의 가치로 간주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개별 기록의 가치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 생산기관의 중요성에 따라 기록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기록의 선별에 효율적이었던 때문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영향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의 독일의 민주화 바람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아카이브가 행정 활동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었다(김현진, 2006, 343). 프로이센의 아키비스트 지펠(Zipfel)은 기록을 통해 행정조직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다른 조직과 어떻게 협력했는지 등을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록평가의 목표로 보았다. 당시 프로이센 국가아카이브의 책임자였던 뮌제백은 아카이브가 “국가 활동의 투명성을 위한 도구”라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에서 프로이센 국가아카이브에서는 기록평가의 기본원칙도 출처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록을 고립된 낱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기록생산기관, 기관의 구조와 업무방식,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김현진, 2006, 344).

출처 원칙을 주장한 학자들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 수준을 기록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상폐와 로어는 특히 기관의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기 위하여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 하향식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조직 위계상 상위에 위치한 기록 생산자들이 가치 있는 기록을 생산한다고 간주하였다. 현대 기록학자인 포스카리니(Foscarini)는 당시 독일의 이러한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독일의 아키비스트들이 자신들을 역사학자로 규정하면서도 강력한 “과학적 책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평가를 직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계로서의 상태(국가), 그리고 “원천에 내재한 객관성”에 의거한 과학적이고 형식을 갖춘 조사로서의 역사연구라는 생각이 이러한 평가방법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Foscarini, 2017, 110-113). 상폐는 생산기관의 위상을 기준으로 기록을 거른 후에 걸러진 기록만을 대상으로 내용 중심의 평가를 제안하였다. 이는 적합성과 출처 지향성이 결합된 형태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처에 의해 대규모 기록이 폐기되고 남은 조건에서의 내용 평가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출처에 입각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김현진, 2006, 351).

그러나 1930년대에도 마이너트(Meinert)와 같은 학자들은 기록평가에서 적합성을 강조하였으며 1958년부터 1970년대까지 짐머만(Zimmermann)은 보존기록의 가치는 그 내용이 결정하고, 출처가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록 내용의 중요성은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와 활동에 비추어 결정하고, 향후 연구 관심사는 현재 연구 활용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추론하고, 관련 전문연구자들의 자문을 받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짐머만은 기록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기록 가치를 매길 수 있다고 보았지만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구체화하지는 못했다(Taylor, 2015). 1979년 짐머만은 평가의 일차적 기준은 출처가 되고 이용(정보 내용과 관련된)은 재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선회하였다.

적합성은 1960년대에 처음 개발된 붐스(Hans Booms)의 이론에도 등장한다(Taylor 2015). 기록을 생산한 그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를 반영하

여 기록을 선별해야 하고, 선별된 기록은 그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와 관련되어야(pertinent) 한다고 주장했다.<sup>5)</sup> 그는 기록을 생산하는 기관이나 기능을 넘어 전체 사회로부터 기록화 대상을 선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기록화 대상은 주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주제는 신문과 같이 동시대의 ‘정보원’을 통해 확인하고, 다른 아키비스트들과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여론의 대변자들의 자문을 받아 ‘기록화계획’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Booms, 1987). 붐스는 주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원’이 민주적 환경에서 생산되어야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독 아키비스트들이 주장한 마르크스-레닌주의 평가 전략에는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붐스의 주장이 서독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동독의 기록화 계획에는 영향을 미쳤다(Taylor, 2015). 1984년 처음으로 동독의 아키비스트는 붐스의 개념에 입각한 기록화계획을 완성하였으나 독일 통일로 시행되지 못했다(Klumpenhouwer, 2015).

1991년 동베를린 회의에서는 출처 원칙과 적합성 원칙을 둘러싼 대논쟁이 벌어졌다. 서독의 참석자들은 전자를, 동독의 대표단은 후자를 지지하였다. 서독의 기록학자 멘네하리츠(Menne-Haritz)는 역사학자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적합성 기반의 잘못된 평가이론 때문에 기록전문직이 자신의 정체성을 역사 의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출처가 평가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적합성은 증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Menne-Haritz, 1994). 이때 붐스는 초기에 본인이 강조하였던 적합성 원칙에 거리를 두었다.

1992년 붐스는 기존의 ‘기록화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1)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 역사 연대기 개발, 2) 출처에 근거한 기록 분석, 3) 연대기를

---

5) 1972년 붐스가 발표한 기록화계획론은 서독의 아키비스트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역사과학이 결여되어 사회적 가치를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동독의 아키비스트들의 비판에 대한 응답이었다(Klumpenhouwer, 2015).

가장 잘 담고 있는 기록의 확인과 같은 절차를 제안하였으며 자신의 ‘기록화계획’이 출처 기반의 기록관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Klumpenhower,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스의 기록화계획은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화대상을 선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므로 본질적으로는 적합성 지향의 평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 통일 후에 적합성 기반의 접근법은 완전히 거부되었으며 엄격한 출처 기반의 평가가 대세를 이루게 된다. 동독에서 만들어진 기록화계획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표방하는 정치적·역사적 가치만이 반영(Klumpenhower, 2015)되었기 때문에 적합성 기반의 접근법에 대한 거부감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테리 쿡(Terry Cook)의 거시평가론과 미국의 기록화전략은 독일 이론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크레츠머(Kretzschmar)와 같은 학자는 출처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고 이에 균형을 맞추도록 봄스의 기록화 프로파일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미국과 캐나다

출처, 적합성이 북미지역의 평가론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겠다. 1948년경 미국 국가기록관리청(NARA)의 아키비스트 바우어(Philip Bauer)는 출처 기반의 접근법이 아닌, 정보 내용을 강조하는 이용 기반의 평가를 옹호했다. 쉘렌버그(Schellenberg)는 1956년 대량생산되는 정부기록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처와 적합성을 통합한 평가이론을 제안하였다. 기록의 이차적 가치에는 역사적 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 가치 외에도 이용 가치(문서의 정보 내용에 근거)가 포함되며, 문서 내용의 중요성(형식 및 고유성과 함께)은 아키비스트가 평가기준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Taylor, 2015).

쉘렌버그가 기록가치에 입각한 평가론에서 출처와 적합성 중 무엇을 더 강조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1991년 동베를린 회의의 발표자였던 멘네하리츠는 쉘렌버그의 평가론을 출처 지향의 접근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옹호하였다(김현진, 2006). 쉘렌버그는 “증거가치의 검토”에서 1) 기관의 행정위계에서 부서의 위치, 2) 각 부서가 수행하는 기능, 3)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서가 하는 활동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고 조직이 어떻게 업무를 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의 기록의 중요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보 가치” 중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부분은 명백히 적합성의 영역이다. 그는 아키비스트가 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하려면 역사 방법론에 대한 양질의 교육, 기록 생산자에 대한 심층 분석, 다른 아키비스트와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법, “절도와 상식”과 같은 기본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Foscarini, 2017, 110-111). 이는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용 분석을 중시하는 사료비판 방법론의 연장선에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의 2차 가치 중 하나인 증거 가치는 쟂킨슨이 말하는 증거와는 달랐으며, 기록 생산조직이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에 얼마나 잘 담겨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적합성 지향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쉘렌버그는 공공기록평가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류학적이고 내용 중심의 접근법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에서 특히 번성했던 민간의 매뉴스크립트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Foscarini, 2017, 111).

1960년대와 70년대에 북미지역에서는 기록화전략이 노동운동과 다문화 아카이브와 관련된 아키비스트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다. 이들은 능동적인 기록화를 통해 소외계층과 주변부집단에 대한 기록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Taylor, 2015). 1975년 사회사학자 하워드 진(Zinn)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아키비스트 제랄드 햄(Gerald Ham)은 중요 사회운동과 사회적 흐름을 포착할 것을 강조하였고 아키비스

트의 주요 사명은 ‘문화 기록화(documenting culture)’가 되어야 하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념화가 수집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Foscarini, 2017, 114). 이는 출처보다 적합성을 우선시하는 평가와 맥을 같이한다. 심지어 잔존하는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할 때 아키비스트가 구술, 사진, 조사 데이터를 만들어서 “결락을 메워야 한다”고까지 제안하였다. 캐나다의 기록학자 휴 테일러(Hugh Taylor)도 평가는 사회 전체의 기록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회적 기록화전략에서는 본질적으로 적합성을 지향하게 된다.

기록화전략을 주창한 미국의 헬렌 사무엘스(Samuels)는 출처와 적합성 사이에서 고민한 학자였다. 1980년대에 사무엘스가 제안한 기록화전략에서는 기록화할 주제를 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지만 훗날 기능분석 요소를 추가하였다. 주제 중심의 접근법이 ‘반기록학적(unarchival)’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기능분석을 전략의 핵심에 배치했다. 테리 쿡은 사무엘스의 기록화전략을 출처기반의 ‘기록학적(archival)’ 접근법이라고 그 위상을 부여하였다(Foscarini, 2017, 116).

캐나다 국가기록원의 공식 방법론으로 채택된 쿡의 거시평가모형은 정부조직의 구조와 기능뿐이 아니라 ‘거버넌스 기록화’를 목표로 하는 혁신적 체계였다. 거버넌스는 기록이 생산되는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다. 맥락은 기록생산자(구조)와 이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기능), 그리고 기능과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시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고객)이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아키비스트는 “구조, 기능, 고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립적이지 않은’ 해석자이자, 평가를 통해 ‘사회가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적 중재인’이 되어야 한다(Foscarini, 2017, 116-117).

쿡의 거시평가모형에서는 정부기관과 이들의 프로그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기록 생산자의 순위를 매기는 하향

식 분석을 하게 되고 영구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제시하는 평가가설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미시평가를 통해 가설을 수정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 쿡은 이 모형을 어떠한 기록의 평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캐나다에서 공공기록물 외에 민간기록 수집에 적용된 적은 없다. 쿡의 거시평가론은 단순히 기능평가도 아니고 조직 위계만을 중시하는 평가도 아니다. 그의 거시평가론은 출처 지향의 평가를 사회적 가치와 연결시키기 위해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

기록평가를 사회적 가치와 연결시킨 것은 붐스의 공헌으로 볼 수 있다. 붐스가 기록평가에 기여한 것은 방법론이 아니라 '탈기관적(post-institutional)' 사고를 통해 기록관리를 사회적 가치와 연결하고 정치사회적 이념이 그러한 연결에 영향을 준다는 성찰에 있다(Foscarini, 2017, 118). 붐스는 나중에 철회했지만, 평가의 근거로서 출처주의에 반대했고 상페와 로어 등이 주장한 정부기능과 조직위계구조의 분석에 기반한 형식주의 방법론에도 반대하였다. 쿡은 붐스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출처 중심의 평가방법론을 창의적으로 재설계했다고 볼 수 있다.

### 3) 출처 원칙으로 충분한가?

다중분류가 가능한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을 조직할 때 적합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으며, 내용의 관련성이나 적합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색인을 제공할 필요성은 높아졌다. 출처주의에 따라 기록을 정리하지만 인명, 지명, 주제명, 사건명과 같은 다양한 접근점을 중심으로 기록을 모으고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조직 영역에서는 출처와 적합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평가에서 출처의 우위

는 확실한 것 같다(Taylor, 2015). 많은 나라에서 기능이나 업무분류체계와 연계하여 기록을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평가제도는 단위과제라는 기능단위에 대한 평가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출처 중심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나라의 평가에서도 적합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 (1) 수집기록물 평가

캐나다와 같이 토털 아카이브 정책에 따라 국가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록과 민간기록 모두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평가정책은 불가피하게 이원화된다. “선별을 위한 평가”와 “수집을 위한 평가”의 차이를 구분하고 서로 다른 평가기준에 따라 소장기록물(collection)을 구축해야 한다(Foscarini, 2017, 111). 특정 기록집합체 중에서 보유할 기록을 선별하기 위하여 아키비스트는 출처의 유기적인 속성을 존중하는 분석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기록물이나 개인기록물 등 수집기관 외부에 존재하는 기록 중에서 무엇을 수집하고 입수할지 계획하는 것은 기록의 주제나 유형(예: 사진, 지도, 문필 원고, 건축 설계 기록)에 대한 수준 높은 결정을 의미하며, 이는 출처 기반이 아니라 적합성 기반 혹은 내용 기반 접근이 될 것이다(Foscarini, 2017, 111).

독일의 경우 기록평가에서 출처와 적합성의 수용 정도는 기록보존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연방정부 수준의 기록보존소는 출처를 고수했지만 그 아래 수준의 정부기관에 속한 기록보존소에서는 역사가를 위한 기록가치에 근거한 오래된 평가방법을 선호했다(Taylor, 2015). 출처주의를 강조하는 독일에서도 국가기록이 아니라 지방아카이브(municipal archive) 수준에서는 지역의 인물이나 사건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기록화 프로파일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Taylor, 2015).



## (2) 사안파일의 평가

테리 쿡의 거시평가모형에서도 아키비스트가 시민-국가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게 기록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적합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민과 국가의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기록 유형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안파일(case file)이다.<sup>6)</sup> 쿡은 1990년대 초 캐나다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Canada)을 위한 RAMP 연구에서 사안파일 평가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하나의 사안파일 전체(기록시리즈)를 대상으로 세 가지 요소(프로그램, 기관, 시민)에 기초한 시민-국가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기록시리즈의 맥락을 조사하는 것인데 그 시리즈를 만들어낸 상호작용의 중요도를 분석한 후 이에 따라 시리즈 전체를 보존할지 시리즈의 일부만을 선별해야 할지 결정한다. 시리즈 일부만을 보존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의 선별에 착수해야 한다. 이때 아키비스트는 샘플링이나 중요한 사안의 선별 등과 같은 방법을 선택한 후 그 방법에 따라 사안파일의 일부를 선별하게 된다(Cook, 1991a; Cook, 1991b; Bailey and Lloyd, 2015). 이렇게 사안파일의 일부만을 선별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전적 평가가 불가능하고 적합성에 근거한 사후적 평가만 가능하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안파일은 인권이나 시민의 권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치 전범의 입국 기록이 포함된 이민자 사안파일 폐기사건을 살펴보겠다. 캐나다로 들어온 일급 전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 단서가 될 만한 중요 기록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는 의혹이 2000년대 초에 제기되었다. 1982년 이루어진 기록 대량 폐기가 은폐를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까지 받았으며 이에 캐나다정부는 캐나다전쟁범

---

6) 사안파일은 19세기 말 유럽의 기록관리체제에 등장하였으며 정부가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케이스를 하나의 파일로 조직하는 사안파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Bailey and Lloyd, 2015).

죄자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했다. 조사결과, 캐나다 이민부는 1982년 보존 공간 문제로 입국기록을 규정에 따라 대량 폐기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표본 기록을 남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측에서는 이민자 사안파일에 나치 전범을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을 거라며 폐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록 평가폐기에는 전범 추방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반영되었다며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캐나다의 기록학자 테리 쿡은 아키비스트의 평가·폐기 행위가 정부의 설명책임성을 좌초시켰다고 비판했다(Cook, 2002; 설문원, 2021).

2023년 하반기에 완공될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록관 설립 사업도 출입국 기록이라는 사안파일과 관련이 있다. 국가기록원이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보존기간 30년 이상인데도 출입국 기록 등의 이관을 보류하였고, 이러한 기록이 누적되면서 법무부가 마련한 자구책이다(문화일보, 2023). 국가기록원이 어떤 평가기준으로 이관 보류 결정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파일은 어떻게 평가·선별되었어야 할까? 정부-시민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모든 입국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방대한 입국기록 중에서 일부만을 남겨야 한다면 사후적으로 중요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 유형이나 인물 유형을 정해서 선별할 수밖에 없다. 기록의 생산맥락이라는 내적 구조와는 관계없는 외적 상황에 따라 선별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선별은 매우 예측적이거나 아니면 기록생산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사후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sup>7)</sup> 가령 NARA의 '부동산 케이

---

7) 미국 NARA는 사안파일의 선별에 샘플링을 허용하며, 영구기록 선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선례가 되는 기록, 2) 광범위한 소송과 관련된 사안 기록, 3) 언론의 폭넓은 관심을 받는 사안 기록, 4) 독보적인 것으로 널리 인정되는 기록, 4) 연차 보고서에 언급된 사안파일, 5) 두꺼운 파일, 6) 기관 절차를 문서화한 파일(Bailey and Lloyd, 2015). 5)의 경우, 어떤 사안파일에 많은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면 그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근거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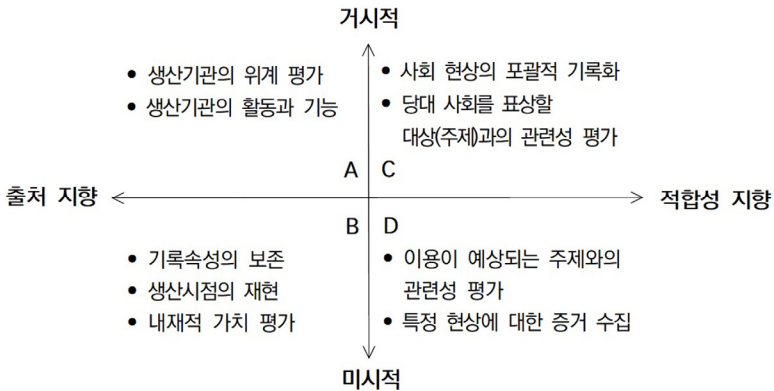
스파일’ 처분기준서(RS No. DAA-0026-2013-0001)를 살펴보면, 보유기간 항목에 “부동산 처분 100년 후 폐기. 폐기 전 역사적 가치를 NARA와 기관에서 재평가”라고 규정되어 있다. 역사적 가치는 훗날 아키비스트가 재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는 일단 해당 사안파일을 연방기록센터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NARA, 2013).

### 3. 보존기록 평가의 방법론적 분석과 적용

#### 1) 방법론적 범주 구분

출처와 적합성을 둘러싼 논의들에서 기록평가의 방법론적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거시평가와 미시평가라는 기준을 적용해 보았다.

<그림 2> 보존기록 평가·선별의 이론적 지향 및 방법론 구분



먼저 출처 지향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의 A와 B영역이 여기에 속한다. 첫째, 생산 맥락으로서 생산자, 활동과 기능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거시적 기능평가이다(영역 A).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 국가기록 평가제도의 기본 틀로 차용되는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생산자의 중요도, 기록을 생산한 업무나 기능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기록을 평가하게 된다. 기능 기반의 거시평가론들이 이 영역을 뒷받침한다. 쿡의 거시평가론도 영역 A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기록의 가치가 기록의 내부에 존재하지 않으며”(Trace, 2010), 기록이 생산된 조직의 맥락을 넘어 시민과의 상호작용이라는 확장된 맥락 속에서 기록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방법론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영역에 속한 방법론에도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록 자체의 속성이나 품질에 따라 기록을 선별하는 방법론이다(영역 B). 기록의 내재적 가치에 따른 평가, 전자 환경에서 ‘공신력 있는 기록’을 판단하는 업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켄킨슨의 기록속성론이 대표적이다. 켄킨슨이 직접적으로 기록평가론을 펼친 바는 없으나 그의 속성론은 바람직한 보존기록(archives)의 형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평가론이다(이승억, 2022).

적합성 지향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록이 무엇을 이해하는 데에 적합해야 하는지, 즉 무엇과 관련되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당대 사회를 대표할 만한 현상과의 관련성이다(영역 C). 사회적 현상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기록화계획이 대표적 사례다. 붐스의 ‘기록화계획’의 초기 모델이나 리처드 콕스(Cox)의 ‘로컬리티 기록화’와 같이 8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실행되었던 ‘기록화전략’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 주변부나 소외공동체가 자신들의 삶을 남기려는 포괄적인 기록화도 방법론적으로는 이 영역에 해당한다. 둘째, 역사 연구나 법적 소송 등 미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와의 관련성이다(영역 D). 쉘렌버그의 평가론이 대표적이다. 특정 인물이나 사안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안파일 선별론도 여기에 속한다. D영역의 평가는 C영역과 비교할 때 포괄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개별적인 현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미시적’이라고 명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의 거시적 분석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승억, 설문원(2021, 68-72)은 고전적 평가론의 방법론적 한계를 논하면서 ‘분석’과 ‘종합’이라는 논리학적 명제 개념을 차용하여 평가 방법론을 분석한 바 있다. 명제의 진위를 진술된 내용 그 자체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분석 명제’라 하고, 명제의 진위를 외적 사실과 접목해야만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종합 명제’라 한다. 이승억(2022)은 이를 출처와 적합성 지향평가의 특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록생산의 내적 메커니즘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출처 지향의 평가는 ‘분석’에 해당하고, 기록생산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외부의 일을 특정 기록과 관련시키는 적합성 지향의 평가”는 ‘종합’으로 볼 수 있다(이승억, 2022).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각 방법론의 특징, 각 방법론에 따른 평가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범 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국가기록평가제도에서는 법률이 기본 규범이지만 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도구적 규범들이 필요하다. 출처 기반의 거시적 방법론에서는 생산맥락과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마련되는 처분기준서(disposition authority)와 같은 규범적 도구가 필요하고, 전자기록의 품질을 고려한 선별을 위해서는 ISO 15489와 같은 표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는 기록을 생산한 주체와 목적, 활동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적합성 기반의 평가에 비해 분석해야 할 맥락의 범위가 좁고(이승억, 설문원, 2021), 평가방법과 기준을 사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기능분류체계와 연계하여 기록이 생산되기 이전에도 평가할 수 있다.

〈표 2〉 기록평가 방법론의 범주별 특징

구분	방법론 사례	규범	특징
A 출처 거시	· 조직 및 기능 평가 · 기능의 사회적 연계 분석(테리 쿡)	표준 · 예) 처분기준서, 기록 관리기준표	· 분석적 평가 · 영구보존 대상을 사전적으로 설정
B 출처 미시	· 보존기록의 속성 · 기록의 내재적 가치 평가	표준 · 예) ISO 15489	· 분석적 평가 · 시스템 및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기록의 품질 평가
C 적합성 거시	· 지역의 기록화전략 · 토달아카이브 정책	정책(윤리와 가치 포함) · 예) 국가기록물 수집 정책	· 종합적 평가 · 사회정의, 공정, 포용 반영 · 예상되는 이용가치보다 집단 정체성을 중시할 수 있음
D 적합성 미시	· 특정 현상의 증거 수 집을 위한 평가 · 케이스파일의 선별	정책(질차와 기준 포함) · 예) 영국 OSP	· 종합적 평가 · 이용자 요구 예측과 분석 · 사회적 관심, 사건 발생 등에 따른 대 응적 평가

적합성 지향 평가는 기록의 가치를 사회적 관심도, 특이한 사회적 현상, 미래의 예상되는 이용 등과 같이 생산맥락 외부의 요인과 연계하여 판단하는 ‘종합’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적합성-거시 방법론(C 영역)의 이행을 위해서는 윤리와 기록에 대한 사회적 가치, 사회정의, 공정, 포용과 같은 윤리적 지향이 반영된 정책 규범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영역의 평가에서는 예상되는 미래의 이용 가치보다는 사회적 소외집단이나 주변부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이들의 집단기억을 더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적합성-미시 영역의 평가는 이용이 예상되는 주제 기록화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주제, 최근 불거진 특정 사건이나 정책에 대응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국가 기록원이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거는 기대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보존기록 선별 실행 정책인 ‘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OSP)’ 중에는 특정 기간 동안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이나 주제와 관련된 특정 기관의 기록물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어떤 방법론으로 기록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기록의 보존가치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이승억, 설문원(2021)은 분석과 종합이라는 평가방법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위 연구에서는 1979년 12월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이 생산한 「차량출입대장」을 사례로 그 차이를 설명하였다. 우선, 초소경비 임무라는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그 기록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 대통령 암살사건 당일인 10월 26일에서 12월 12일까지의 대장에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 사건인 12·12군사반란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은 군인과 민간인들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1979년 12·12 군사반란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이 기록을 ‘영구보존’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승억, 설문원, 2021, 68-72). 이는 〈그림 2〉의 A영역과 D영역의 방법론이 충돌하는 경우로 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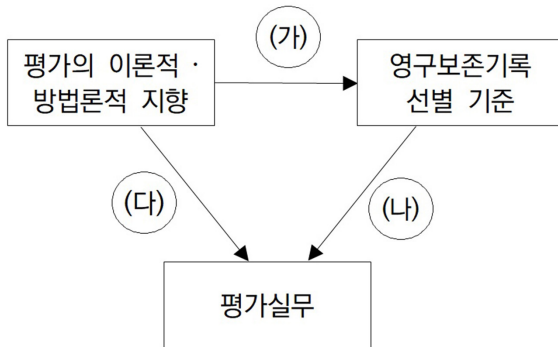
당연히 이러한 기록을 위해서는 D 방법론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한 캐나다 이민자 사안과일에 대해서도 적합성에 근거한 종합 평가를 했더라면 나치 전범의 입국 파일이 폐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출입국파일이나 「차량출입대장」 전체를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분석적 방법의 평가에서는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기록의 필요보유기간을 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종합적 방법의 평가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과의 관련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건이나 현상의 중요성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승억, 설문원, 2021, 68-72). 이는 쉘렌버그 평가론의 한계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이다. 쉘렌버그는 기록에 담긴 인물, 사물, 사건 등에 대한 ‘사실’을 중시했는데 어떤 사실의 중요성은 보통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이승억, 설문원 2021). 게다가 그러한 중요도는 이용자 요구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유동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적합성에 의한 평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떤 사건이 중요해졌을 때 관련 기록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과거사 진상규명 기관에서 당시의 차량 출입기록

을 찾았으나 결국 못 찾았다고 한다(이승억, 2022).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어떤 하나의 방법론으로는 ‘기록의 침묵’에 대항하고 국가의 설명책임성과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 2) 공공기록물 영구보존 기준의 분석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평가는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히 영구보존기록물은 이 시행령에 적시된 선별기준을 고려하여 선별된다. 이러한 선별기준은 매우 복합적인 이론적, 방법론적 지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가실무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더 분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림 3〉 참조). 각각의 선별기준에는 어떤 이론적, 방법론적 지향이 반영되어 있는지(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나), 한편 평가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이론적, 방법론적 지향은 무엇인지(다)를 생각해보았다.

〈그림 3〉 이론-규범-실무의 상호과정 사례





우리나라 공공기록물의 평가실무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최재희, 2014). 첫째,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단위과제별로 책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책정기준도 제시하고 있는데,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등 보존기간별로 해당하는 기록물 유형을 [별표 1]에서 열거하고 있다. 단위과제에 보존기간을 책정하면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이는 출처에 입각한 사전적 평가에 해당한다. 각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처리과에서 부여한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조정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완성하게 된다.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은 그 단위과제에 속한 기록물에 일괄 상속됨으로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결정된다.

둘째,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각 기관의 기록연구사가 주체가 되는 이 단계의 평가는 폐기를 위한 평가로서 이미 30년, 준영구, 영구로 보존기간을 책정한 기록물은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 폐기는 기록물철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록철별 검토의견을 작성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이관받은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30년, 준영구인 경우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때 일부가 다시 영구보존 기록물로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영구보존 기록물 여부는 거의 1단계에서 결정되며, 2, 3단계에서는 일부 기록의 보존기간이 상향될 수 있다.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생산기관의 기능이나 업무에 중심을 둔다. 1단계는 주로 출처 지향의 방법론을, 2단계와 3단계는 출처뿐 아니라 적합성 지향의 평가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2단계에서는 외부 심의위원이 참여하여 생산기관의 가치를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심의를 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행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이승억, 202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개정 2020. 3. 31.) 중에서 영구보존 책정 기준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이 기준의 작성 주체는 국가기록원이다.

<표 3> 영구보존 책정 기준

호	내 용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에서 선별)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에서 선별)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에서 선별)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에서 선별)
5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에서 선별)
6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서 선별)
7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에서 선별)
8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에서 선별)
9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조사 연구 검토 기록물
10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회의록(대통령, 지자체장, 교육감 등 정부나 교육단체의 상위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체의 회의록)
11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할 시청각기록물 (중요 사건이나 행사에 대한 시청각 기록물)
1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13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15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1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 관련 기록물
17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
18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호	내 용
19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20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22	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
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2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출처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1] 중에서 해당부분 축약.

1단계에서는 기능분류체계의 최하위계층으로 설계된 단위과제에 보존기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영구보존기록을 판단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때 참고해야 할 규범은 <표 3>과 같이 기록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이를 업무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적용할 수 있다.

### (1) 출처 중심의 기준

먼저 기능과 업무 분석, 그리고 산출 기록물의 유형 분석을 기반으로 영구보존기록을 식별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1호, 2호, 7호, 12호를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1호)은 그 기관의 핵심기능을 도출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2호)은 해당 기록물이 생산되는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7호),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12호) 역시 사전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해당 기록물이 산출되는 단위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특정 기능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항목도 있다. 13호(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20호(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21호(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기록물이 생산되는 업무를 확인함으로써 선별이 이루어진다. 18호(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도 유사한 경우다.

조직 위계상 상위에 위치하는 생산자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19호(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가 있다. 미국의 NARA가 이메일 평가할 때에 적용하는 캡스톤 접근법도 이메일 생산자의 직위에 따라 이메일 기록의 중요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접근법이다.

특정 유형의 기록물을 영구보존기록물로 선별하는 기준도 있다. 3호(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9호(조사 연구 검토 기록물), 22호(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가 대표적이다.

## (2) 적합성 중심의 기준

그러나 조직의 기능을 넘어 사회적 관심사의 변화나 발생한 사건이나 재해 등 기록 외부적 조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록을 선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3호(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16호(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 관련 기록물), 25호(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가 대표적이다. 이는 기록이 생산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1단계 평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이 기준들은 주로 2단계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다. 적합성의 영역이다. 적합성의 판단을 위해서 기록전문직은 조직의 활동 영역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와 이용을 예측하는 데에 필요한 경험 지식,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

단일 조직을 넘어 범사회적 차원의 수집이 필요한 항목도 있다. 6호(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17호(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가 이에 해당한다.

### (3) 혼합적 기준

4호(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와 같이 해당 기록물이 생산되는 업무를 분석할 필요도 있지만, 새롭게 불거진 정책이나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특정 기록물을 영구보존하도록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시청각 기록물에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기능 중심의 기준이 있는가 하면,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 “대규모의 토목·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

항”에 관한 시청각기록물 등과 같이 사후적으로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만 하는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회의록(10호)의 경우, 영구보존으로 선별되는 기준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지자체장, 교육감 등과 같이 정부나 교육단체의 상위직위자 등 회의 참석자의 지위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국무회의와 같이 정기적인 회의라면 업무 분석을 통한 사전적인 선별이 가능하지만 비정기적이거나 일회성 회의인 경우 사후적으로 평가·선별해야 할 것이다.

#### (4) 평가실무에서의 시사점

평가실무에서 각 기준들을 적용하여 영구보존기록을 선별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많은 항목이 출처 분석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 변화와 이용자(특히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대한 예측적 판단 없이는 적용하기 어렵다. 가령, <표 3>의 기준 1호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을 식별하기 위해 우리 기관의 핵심 업무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판단할까? 1, 2단계의 평가를 책임지는 생산기관의 기록관리자들은 대체로 “업무의 중요성”을 먼저 따지지만 그 외에 “국민적 관심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높게 책정한다.<sup>8)</sup> 오랜 경험을 통해 누군가 찾을 만한 기록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지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이용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출처 중심의 평가실무에서도 적합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해외의 처분지시서 사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기능분석을 토대로 개발되지만 영구보존 여부는 그 기록이나 업무의 사회적 의미, 국민들의 삶이 미치는 영향력 등과 같은 중요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8) 15년 경력의 중앙행정기관 기록연구사와의 면담(2023.12.30.).

을 토대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단계 평가에서는 출처뿐 아니라 적합성, 즉 사회적 수요와 가치를 반영한 세부 기준들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과정, 근거,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이를 경험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합성 기반의 선별의 경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이념적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선별행위를 기록으로 충분히 남기고, 설명책임을 다할 수 있게 평가 실무를 수행해야” 한다(Frogner, 2015, 376). 그렇다고 적합성 위주의 평가를 기본 체제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기록의 미래 수요 예측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출처 기반의 평가와 결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기록의 경우 출처 분석 기반의 사전적 평가는 절대적이다. 따라서 적어도 영구보존 기록물의 선별을 위해서 국가기록원이 영국 OSP의 사례와 같이 적합성과 출처 접근법이 결합된 규범들을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구보존 기록의 선별기준별로 절차와 세부기준, 적용 사례 등을 포함하는 실행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평가 실무에서 산출되는 평가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 친화적인 의사결정 지원 도구도 함께 마련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주의 평가가 중심이 되는 1단계 평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2단계 평가에 필요한 분석 방법은 다를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는 국가기록원이다. 국가기록원이 별표 기준에 맞는 기록을 이관 받고자 한다면 각 단계별로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능평가라는 구조와 영구보존기록물 책정 기준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사회적 요구나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 즉 ‘종합’적 평가는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 제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폐기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어떤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의 평가·선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사안파일도 이러한 재평가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구기록 선별을 위한 평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책임과 권한이다. 1단계 평가에서 영구보존 기록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한 점검이나 승인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2단계에서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거의 없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 명확하고 확고하게 마련해야 하며, 특히 적합성 영역과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문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맺음말

공공기록관리 혁신을 거쳐 형성된 2006년 공공기록물법 체제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존기록 평가에서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전자 환경에서 현용기록의 평가를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1990년대 말까지 많은 나라에서 국가기록평가에 기능접근법을 도입하였고 전통적인 기록스케줄은 기능 기반의 분류시스템과 연계한 보유플랜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호주 AS 4390과 같은 현용기록관리 표준이 등장하면서 보유와 폐기 결정뿐 아니라 어떤 기록을 생산·획득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기록평가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기록평가체제는 기본적으로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법규준수를 중시하며, 기록의 잠재적인 기억가치와 역사적 가치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Foscarini, 2017, 120). 다만, 북미지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는 영구보존 기록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 전통 위에서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수용하고자 노력한 반면 우리의 영구보존기록 선별에 대한 고민은 단위과제 평가의 틀 안에 매몰되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영구보존기록의 선별과 보호를 규범과 실무는 매우 빈약하다.

평가이론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기능이나 구조에 대한 평가만으로 영구보존할 기록을 선별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갖는다. 효율적이지만 사전적 평가만으로 영구보존기록을 선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를 고려할 때, 보존기록 선별을 위한 평가정책, 국가차원의 기록수집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억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은 어떤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에 답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꺾어야 할 단추는 이러한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생산기관(공공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영구보존기록의 선별 책임에 대해서는 생산기관보다 영구보존기록물관리기관이 더 무겁게 져야 한다. 생산기관과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답은 자명하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하여 그 의미를 남기고, 국가와 사회의 기억을 보존할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그들의 본원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현진. (2006). 독일 기록관리 담론에서의 평가론. 기록학연구, 14, 325-358.  
설문원. (2021). 기록학의 지평. 조은글터.

- 이승억. (2022). 기록평가의 두 가지 지향 : 출처와 적합성.(미발표 원고).
- 이승억, 설문원. (2021).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보존기록평가론의 전환. 기록학 연구, 67, 57-97.
- 최재희. (2014).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153-175
- 현문수. (2019).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 분석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중앙 및 연방정부 기록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4), 175-209.
- 문화일보. (2023). “법무부 기록관 9월 완공 목표…320만권 분량 보존. 문화일보 2023.1.3.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10301071021289001>
- Bailey, Catherine A. and Lloyd, Tina. (2015). “Case file.” In: Duranti, Luciana and Franks, Patricia C. eds, Encyclopedia of Archival Science. Rowman & Littlefield, 130-133.
- Booms, Hans. (1987).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Archivaria, 24, 69-107; 오향녕 역. 2005. 기록학의 평가론. 서울: 진리탐구. 159-221.
- Cook, Terry. (1991a). The Archival Appraisal of Record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A Ramp Study with Guidelines. Paris: UNESCO.
- Cook, Terry. (1991b).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 Appraisal guidelines for sampling and selecting case files. Archivaria, 32.
- Craig, Barbara. (2015). “Appraisal.” In: Duranti, Luciana and Franks, Patricia C. eds, Encyclopedia of Archival Science. Rowman & Littlefield, 14-18.
- Frogener, Raymond. (2015). “Selection.” In: Duranti, Luciana and Franks, Patricia C. eds, Encyclopedia of Archival Science. Rowman & Littlefield, 373-377.
- Foscarini, Fiorella. (2017). Archival appraisal in four paradigms. In: MacNeil, Heather and Eastwood, Terry. eds,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2nd edition. Santa Barbara : Libraries Unlimited, Chapter 5, 107-133.
- Huth, Geof. (2016). Module 14: Appraising Digital Records (Trends in Archives Practic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ICA. (n.d.). principle of pertinence. In: Multilingual Archival Terminology. <http://www.ciscra.org/mat/mat/term/274> 2020,2,20. 검색.
- Klett, Elisabeth. (2019). Theory, regulation and practice in Swedish digital records appraisal. Records Management Journal, 29(1/2), 86-102.
- Klumpenhower, Rick. (2015). Documentation plan. In: Duranti, Luciana and Franks, Patricia C. eds, Encyclopedia of Archival Science. Rowman & Littlefield, 190-192.

- Menne-Haritz, Angelika. (1994). Appraisal or documentation: Can we appraise archives by selecting content. *The American Archivist*, 57, 528-542.
- NARA. 2013. Request for Records Disposition Authority(Records Schedule DAA-0026-2013-0001). [https://www.archives.gov/files/records-mgmt/rds/schedules/departments/department-of-homeland-security/rg-0026/daa-0026-2013-0001\\_sf115.pdf](https://www.archives.gov/files/records-mgmt/rds/schedules/departments/department-of-homeland-security/rg-0026/daa-0026-2013-0001_sf115.pdf)
- Pearce-Moses, Richard. (2005). *A Glossary of Archives and Records Terminology*.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Taylor, Isabel. (2015). "Principle of pertinence." In: Duranti, Luciana and Franks, Patricia C, eds. *Encyclopedia of Archival Science*. Rowman & Littlefield, 281-184.
- Trace, Ciaran B. 2010. On or off the record? : Notions of value in the archive. In: Eastwood, Terry and MacNeil, Heather. eds.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Santa Barbara : Libraries Unlimited. Chapter 3, 47-68.